



허술한 수입녹용 검사, 본회가 직접 하겠다

- 본회 식약청에 수입녹용 검사 권한 부여 요구,
수입녹용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 -

을 초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수입녹용을 18톤(시가 71억4천만원)이나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사슴만성소모성질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까지 수입 판매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이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녹용검사제도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그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현행 수입녹용에 대한 관능검사는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 의약품시험연구소만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수

출입협회는 한약재 수입업자 권익보호 단체다. 엄밀히 따지자면 의약품수출입협회 회원이 수입한 녹용을 그들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셈. 이에 본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발송, 수입녹용에 대한 관능검사 권한을 본회에 부여하는 한편 현행 시행되는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선검사 후통관' 제도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원료의약품 및 식품가공용 수입생녹용이 용도의 불법반출 및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제목 : 식약청 소관 양록관련 현안 건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월 1일 개최된 이영순 청장님과 축산관련단체장 조찬 간담회시, 귀 청 소관 양록관련 현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차후 서면 제출키로 논의된 바, 붙임 자료로써 제출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양록관련 현안 건의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1. 수입녹용 검사업무(관능검사) 녹용 생산자 단체 이관 지정
-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금년부터 8개

민간기관으로 확대(본회 건국대학교 녹용연구센터와 업무제휴 전제, 한약재 검사기관 등록 추진 중)

- 기존 8개 기관 중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 의약품시험연구소만이 관능검사 시행가능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의수협은 한약재 수입업자 권익보호 단체로서 그 산하 연구소의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지정 및 관능검사 독점 시행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녹용 전문기관인 한국양록협회가 수입녹용 관능검사 업무를 맡도록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명문화하고, 업무제휴 기관인 건국대학교 녹용연구센터를 한약재 검사기관(관능검사 포함)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

- 만약, 관능검사 기관 단독지정이 불가할 경우 수입단계에서 생녹용과 건녹용을 구분하여 검사기관 지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예; 생녹용 관능검사 → 한국양록협회, 건녹용 관능검사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 수입녹용 불법유통 단속 강화

- 원료의약품 및 식품가공용 수입생녹용 용도의 불법반출 및 국산둔갑 성행

- 국산녹용 판매 지장 초래, 녹용가격 및 유통질서 문란, 소비자 신뢰저하

- 최근 생녹용 수입량 추이

연 도	수 입 추 이	
	수량(kg)	증감(%)
1998	22,560	-
1999	80,457	△256.6
2000	86,138	△ 7.1
2001	90,734	△ 5.3

- 3년간 생녹용 수입량 4배 이상 급증,

연간 5~6만kg 용도의 불법유통 추정

- 관광을 가장한 노인 등 대상 편법판매(속칭 지하방 등) 조직 최근 급증, 이들을 통해 불법유통 녹용 판매행위 성행

- 양록업계 수입녹용 감시단, 수입생녹용 불법유통 신고 포상금제 시행 등 자체 감시활동 추진중이나 수사권, 사법권이 없으므로 적발 및 고발 현실적 불가

- 본회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음

- 수입녹용 유통관리 및 용도사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시행 촉구

- 관련기관(식약청) 관리소홀 및 공무원 결탁 의혹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3. 수입녹용 통관제도 개선

- 부적합 판정 수입녹용 불법유통 사례 만연

-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 최근 3년간 부적합판정 녹용 2만1천kg(77억원 상당)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 대거 적발, 구속 등 사법처리

- 98년 이후 3년간 부적합 판정 받은 녹용 11만kg 대부분 시중 불법유통 추정

- 국민건강 위협, 국산녹용 판매 차질, 저질 및 가짜녹용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저하 및 전체 녹용소비 둔화 우려

- 부적합 판정녹용 수거, 반송 및 폐기처분 철저 이행 여부 감시감독 강화, 단속 및 처벌강화 등 획기적 대책 마련돼야 함

-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제 5조 3항 우선 통관 규정) 등 관련제도 개선, '선통관 후검사'를 '선검사 후통관'으로 바꾸어야 함 **안국양록**